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윤 명 현 환경부 민간환경협력과장

☎ 02-2110-6694 yoon1111@me.go.kr

필자약력

- 1982~1990 환경청
- 1990~2005 대구지방환경청, 부산환경출장소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2005~2007. 4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환경의 실상을 알린 지 반세기가 지났다. 오늘날 세상에 회자되는 환경문제는 농약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만이 아니다.

사막화, 생물다양성, 유해물질의 국가간 이동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기후 변화는 앤 고어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에게 노벨평화상을 안겨줄 정도로 인류 생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환경문제가 특정 지역의 문제에서 전 지역적인 문제로 확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근원적인 대처 방법으로 환경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Agenda21에서도 “환경과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시키고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 하며, “교육, 공공 인식의 증진 및 홍보는 실제 의제21의 모든 분야와 관련” 되어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의제21의 교육 기본원칙을 제시한, 소련의 트빌리시에서 1977년 열린 ‘환경 교육에 관한 정부간 회의’에서는 환경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도시와 농촌 지

역의 경제·사회·정치·생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책임, 기능 등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집단, 사회 전체가 환경 지향의 새로운 행동 양식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러한 환경 교육의 국제적인 해석과 그 궤를 같이 하여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교육 발전계획’에서도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를 기르고, 환경과 인간, 문화간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게 하며, 환경문제의 탐구 및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개념 짓고 있다.

환경지향의 새로운 삶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환경 교육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환경영향평가 제도,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 제도를 다룰 사람의 환경 가치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생적인 환경동아리활동을 유도하여 실천적 환경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과목 개설,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 등 다양한 환경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일반시민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환경체험교육, 시민환경강좌, 주부환경교실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재정 및 교육자료 등을 적극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인 관심 증대로 현재 민간부문에서의 환경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약 500여개 민간단체에서 80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학교와 사회분야에서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는 있으나 학교 환경교육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 반면 입시 위주

의 교육 풍토에서 실천과 체험이 중요시되는 환경교육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어렵고, 사회 환경교육은 지역사회 문제 중심의 실천과 체험을 강조하나 교육내용의 일관성과 체계화가 부족한 점이 있어 양자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각자의 장점을 흡수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교육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속한 지역 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담론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대한 논의를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학교 환경교사와 지도자, 사회 환경교육 전문가와 활동가들 간에 연계 활동이 미미하여, 같은 지역을 상대로 상이한 시각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어 각 분야에 산재한 환경교육 역량을 국가 차원에서 결집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환경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책 연구 전담 조직의 부재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환경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학교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그 교육의 바람직한 효과가 지역에서 국가로 더 나아가 세계로 파급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한 체계로 아우르는 환경교육 관련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교육 관련법의 부재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환경교육 관련 예산 투자에도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환경교육을 진흥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환경교육법을 참조하여 그동안 꾸준히 환경교육법 제정이 논의되어 왔다. 2002년에는 국회에 제정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아쉽게도 법률로서 탄생되지 못한 바 있다. 다행히 현 17대 국회에서 이경재 의원과 제종길 의원의 발의로 두 개의 환경교육관련 법률안이 상정되어 지금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관련부서 및 기관, 단체들 간의 분분한 의견을 어느 정도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법률

안이 학교 및 사회환경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된 의견을 담고 있어 단일안으로 조정되기에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 일정상으로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형편인 바,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동 법률의 제정을 위해 환경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여론을 형성하고 전문가등 사회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이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동법률이 제정되면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 법률안에는 앞서 설명한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와 사회에서의 유기적인 환경교육 체계 구축, 환경교육의 질적 제고 방안과 사회 각 분야에 산재한 환경교육역량을 국가차원에서 결집시킬 수 있는 제도 등이 담겨 있다. 두개의 법률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주요한 제도를 살펴보면, 환경교육의 국가적 전략인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환경교육진흥·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의 지원, 사회분야 환경교육의 수준을 제고할 사회 환경교육사(환경교육코디네이터)제도 및 양성기관 지정, 환경교육 정책 연구 개발과 체계적 전략 마련의 주체가 될 환경교육센터설치와 환경교육의 재정을 담당할 재단설립 등이 들어있다. 이중 정부의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환경교육센터는 설치 보다는 기존의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재단 역시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선에서 추진되고 있다. 환경교육은 국가수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대인 사회구성원의 올바른 환경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으로 개인, 집단, 사회 전체가 환경 지향의 새로운 행동 양식을 개발하는데 있다. 다만 환경교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문제의 본질이 자연과학, 사회 과학, 인문학 전 분야에 걸쳐 학제적 성격을 띤과 동시에 간학문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과제로서,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기반이 구축된다고 해서 환경교육이 저절로 활성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각자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